##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항만운송사업법위반·

## 사기

[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. 5. 21. 2014고단231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황재동(기소), 서지원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재원 외 3인

## 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벌금 20,000,000원에, 피고인 2를 벌금 5,000,000원에,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4(2심:피고인 2)를 벌금 10,000,000원에, 피고인 5를 벌금 4,000,000원에, 피고인 6을 벌금 2,000,000원에, 피고인 7(2심:피고인 3)을 벌금 15,000,000원에, 피고인 8 주식회사를 벌금 5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2, 피고인 4(2심:피고인 2)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(2심:피고인 3)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2, 피고인 4(2심:피고인 2), 피고인 5, 피고인 6, 피고인 7(2심:피고인 3), 피고인 8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압수된 증 제7, 9, 18, 19, 29, 41, 48, 51, 67, 68, 75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면소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[이유]

1